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42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절차이행 청구]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나5825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42169 판결

전 문

원고별교농업협동조합

피고A

변론 종결 2016. 5. 19.

판결 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에 대한 3/7 지분, D에 대한 2/7 지분, E에 대한 2/7 지분에 관하여 가지는 1987. 11. 2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C,

D, E에 대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나동 205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4. 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채권자 망 F: 1994. 7.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유자 G, H, I, J의 각 1/4 지분 앞으로 1981. 6. 11. 각 마쳐졌다.

나. C, D, E는 망인의 처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C은 3/7 지분, D, E는 각 2/7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 <표1>과 같이 순차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2011.

4. 22. K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의 순번 4번 비고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쳤다가 인천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M이 2015. 4.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1	소유권보존등기	1981. 6. 11.	G, H, I, J: 각 1/4 지분	
2	소유권이전등기 / 1979. 11. 20. 매매	1997. 8. 19.	C: 3/7 지분 D, E : 각 2/7 지분	
3	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1987. 11. 26. 양도약정	2008. 9. 12.	B	
4	소유권이전/2008. 9. 2. 매매	2008. 9. 30.	K	2011. 4. 22.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24,000,000원, 채무자 K, 채권자 원고)
5	소유권이전/2015. 4.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5. 4. 3.	M	

라. 위 <표1>의 순번 3번 기재 ' 1987. 11. 26. 약정'에 관하여, B, C, D, E, 피고 등 사이에

진행되었던 주요 소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1	원고: B 피고 : C, D, E 피고 보조참가인 : 피고(A), N 등	1심 : 부천지원 97가합6420	주문 : C, D, E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9개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7. 11. 2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C은 3/7 지분, D, E는 각 2/7 지분)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B이 청구취지 기재 9개 부동산에 관하여 F에게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991. 4. 26. 보조참가인 A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B은 C, D, E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할 권리를 상실하였다(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하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오로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항요건의 구비와 관계 없이 채무자 측에서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2심 : 서울고등법원 2000나6539 (변론종결일 : 2000. 11. 7., 판결선고일 : 2000. 12. 5., 상고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됨)	주문 : 원심 판결 취소/B의 C, D, E에 대한 청구 기각.	
2	원고: B 피고 : C, D, E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719 (무변론, 판결선고일 : 2008. 7. 9., 항소기가 도과로 확정됨)	주문 : C, D, E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5개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7. 11. 2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C은 3/7 지분, D, E는 각 2/7 지분)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3	원고(재심피고): B 피고(재심원고): C, D, E	1심 : 인천지방법원 2009재가단27	주문 : 재심대상판결(위 순번2번의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719)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순번1번의 확정판결에서 B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서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B은 위 1991. 4. 26.자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확정판결이 난 전 소송(서울고등법원 2000나6539)의 변론종결 전인 1991. 11. 4. 이루어진 이상 이 역시 B이 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2심 : 인천지방법원 2010재나62	B의 항소기각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가. 별지 청구원인의 제1항 기초사실 기재 내용 중 가.항, 나.(1)항은 표2의 관련 판결들에서 인정된 내용이며, 별지 청구원인의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1991. 4.

26.자 약정이 1991. 11.경에는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은 표2의 순번2 판결(이하 '관련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망인(F)의

상속인들인 C, D, E로부터 1987. 11. 2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표1의 순번3)를 2008. 9. 12. 마쳤는데, 재심판결(표2의 순번3)은 위 관련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B의 C, D, E에

대한 청구(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5개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2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기각한 점, ② 재심판결의 주된 이유는 "표2의 순번1 기재 확정판결(이하

'최초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 이미 '1987. 11. 26.자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B이 1991. 4. 26. 피고(A)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배척한 바 있고, 설령 위 1991. 4.

26.자 양도약정이 B과 피고(A) 사이에 1991. 11.경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2000. 11. 7.)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새로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위 1991.

4. 26.자 약정은 피고의 O에 대한 6,030만 원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자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연립주택 27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정한 것인 점, B이 위 1991. 4.

26.자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망인 또는 C, D, E에게 통지하였거나 C 등이 위 채권양도 사실을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이 사건에서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 각 증거

및 위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 위 1991. 4. 26.자 채권양도 약정의 합의 해제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B에게 소급하여 당연히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가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할 의무를 새로이 부담한다거나, ⑥ 피고가 망인 측에게 위 채권이 B에게 양도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박상준

별지